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 I. 제품의 결함과 소비자 피해

현대 경제사회의 소비자 피해는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한 상품의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경제구조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로서, 그 피해를 완벽히 예방하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나타남.

### 1. 피해의 광범위한 파급

대량생산된 상품이 대량판매체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광범위하게 파급됨. 대량으로 판매된 후에 결함이 밝혀지게 된 상품은 이미 그 피해의 가능성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이며, 더욱이 수출품인 경우는 그 피해의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태임.

### 2. 피해 원인 규명의 어려움

오늘날의 상품 또는 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여 생산 공급되고 있으며 유통과정 역시 대단히 복잡함. 소비자 피해의 원인은 상품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했는가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음. 또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그 피해의 원인인 제품의 결함을 밝혀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3. 소비자 인식 변화

결함있는 제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바라보는 소

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즉, 피해의 책임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제조업자에게 가중시키고 있는 동시에 피해보상 청구액 역시 생활수준과 소득의 향상정도에 따라 급격히 커지고 있음.

## 4. 피해 유형의 다양성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유통구조에 의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제품의 오용과 남용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임의적인 제품 변경 등에 따른 피해 등 각양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II. 생산물 배상책임이란?

### 1. 생산물 배상책임의 정의

생산물 배상책임(PRODUCTS LIABILITY : PL)이란 불법행위책임법 체계 중의 한 분야로서 발전되어 온 제품과 관련된 민사책임의 한 형태임. 즉,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가 자신이 만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삼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제조업자 등)가 피해자(소비자 등)에게 지는 민사책임을 말함.

### 2. 생산물 배상책임 부담 주체

생산물 배상책임은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부품제

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상품의 설계, 제조, 분배 등 상품의 유통과정에 참가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시공한 용역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같은 맥락에서 부담하게 됨.

**\* 배상책임 주담 주체 및 책임 부담 원인**

제조업자의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	시공업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상의 결함</li> <li>· 제조 공정상의 결함</li> <li>· 표시나 사용 방법 등 지시상의 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방법 설명상의 과실</li> <li>·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한 용역의 하자에 따른 책임</li> </ul>

**\* 책임있는 과실의 예**

- 제조업자의 책임 : 자동차 연료통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노출된 설계상의 결함.
- 판매업자의 책임 :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의 추천을 요구한 소비자의 요청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한 주의의무 결함.
- 시공업자의 책임 :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의 용역 제공상의 결함.

- 시험과 검사의 의무(Duty to test and Inspect)  
예) 자동차 제조업체의 충돌시험
- 지시와 경고의 의무(Duty to Instruct and Warn)  
예) 미국 내에서 약품 등 신체의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사용 설명 및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 또한,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위해 위험물질(농약 등)에 해골과 십자가 등 그림으로써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3. 생산물 배상책임의 범위**

**1) 과실책임(Negligence)**

제조업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리

**\* 주의 의무의 내용**

- 안전한 설계의 의무(Duty of Safe Design)  
예) 세탁기의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세탁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설계
- 안전한 제조, 조립 및 포장의 의무(Duty to safely Manufacture, Construct, Assemble and Pack)  
예) 포장육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상의 철저한 위생관리

**2) 보증책임(Breach of Contractual Warranty)**

상품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보증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묻는 법리

- 명시적보증(Express Warranty) : 제품의 특징이나 품질에 대해 팜플렛, 견본 등을 통해 홍보 또는 약속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  
예) 미국 Ford사는 자동차 앞 유리창이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는 선전문구를 기재한 팜플렛으로 홍보하여 자동차를 판매함. 그러나 자동차 사고시 앞 유리창이 파손되어 인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배상책임을 지게됨.
- 묵시적보증(Implied Warranty) : 제품으로서 판매되기 위해 묵시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품

질이나 안전성을 결여했을 때 지는 책임

3)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아니하고 결함있는 제품이 시판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

예) 4살짜리 아이가 안전덮개가 없이 작동중인 농기구에 부모가 돌보지 않는 사이에 심하게 다

친 경우, 4살의 어린이는 그 농기구를 사용할 것으로 의도되지도 않고 예상할 수도 없지만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즉, 농기구에 어린이를 위해 안전장치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그 제품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부과한 판례.

Ⅲ.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화 동향

입 법 추 진 과 정	입 법 추 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년대 입법화 논의 시작</li> <li>· 1989년 소비자보호원 입법제안</li> <li>·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입법추진</li> <li>· 현재 KDI와 소비자보호원에서 제도 도입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중</li> </ul>	<p>책임법리 : 현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즉, 제조업자의 과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결함있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할 것임.</p> <p>거증책임 :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하게 됨(거증책임의 전환)</p>

\*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현황

- 미국 : 1930년대부터 판례법에 의해 가장 엄격한 PL제도 운영
- 유럽 : 1987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15개국에서 시행 중임
- 일본 : 1995년 7월 1일 시행
- 중국 : 1993년 9월 시행
- 호주 : 1992년 7월 시행
- 브라질, 필리핀 등도 90년대 초반부터 시행 중

2. 소비자보호법 개정

1) Recall제도 활성화 :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으로서 위해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금지 명령 외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Recall제도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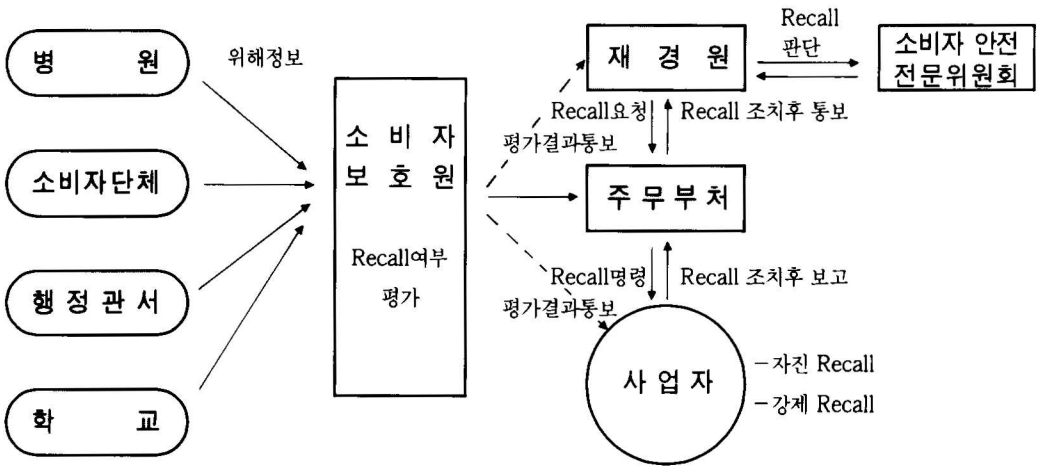
- 위해정보 수집 :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찰서, 소방서, 소비자단체, 종합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업무상 알게 된 위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 결함제품의 위해성 평가 : 위해성 평가는 신중을 기하는 작업으로서 평가기관은 소비자보호원 산하의 현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확대개편 내지

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의 신설을 검토 중임.

- 사업자의 자발적 Recall : 위해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부의 강제적 Recall : 사업자의 시정결과가

미흡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함.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Recall 수행. 명령 불복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 소비자 단체 활동 활성화

- 소비자 단체 등록 의무 폐지
- 소비자 단체의 시험, 검사결과 공표범위의 확대

## 3) 사업자의 의무 강화

- 표시, 광고 기준 구체화(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금지, 광고매체 및 광고 시간대의 제한 가능)
- 소비자 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의무

## 3.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

다수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개인이 입은 손해가 소액이어서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를 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피해자 중 1인 또는 소비자 단체 등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효과는 전체 피해자에게 똑같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96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무부에서 작업 중)

## IV. 외국의 PL 운영 실태(미국)

### 1. 산재사고의 PL 처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고용자가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은 그 보상액이 낮기 때문에 공작기계 제조업자에 대한 PL 소송으로 연결됨.

### 2.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

징벌배상은 가해자측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가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개념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임. 징벌배상은 안전기준의 위반, 부적절한 시험 검사, 경고의무 무시, 입수된 위해정보의 무시 등과 관련하여 발생됨.

### 3. 변호사의 성공보수제

원고의 변호사는 성공보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다수의 변호사가 조그마한 사고에도 피해자를 부추켜 PI 소송으로 이끌려고 함.

## V.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 1. 보험의 개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의 생산, 유통, 공급,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자가 그 생산물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2. 보험의 종류

- 1)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특별약관 첨부)  
-주로 국내에서 판매, 소비되는 제품에 사용함.
- 2) 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미국 ISO 약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사용

###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 회상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 1회상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중재, 화해, 조정애 소요된 비용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
- 2)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4)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5. 보상하는 손해의 예

- 1) 결합있는 전열기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
- 2) 도시락의 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
- 3) 주차설비의 기계적 결합으로 주차중인 차량의 추락사고
- 4) 압력을 이기지 못한 가스통의 폭발사고
- 5) 안전장치가 미비한 녹즙기에 손가락 절단 사고

### 6.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나, 생산물이 제조, 판매, 시공되는 기간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제조, 판매, 시공이 끝난 후에도 생산물은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계속 보험을 갱신하여야 담보기간의 공백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LG화재, '96 위험관리 Workshop 자료 참조)

- 손해 경감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사용한 협력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